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73 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이훈기·노종면·강유정

신장식 · 허종식 · 김태선

김정호 · 김우영 · 조인철

강준현 • 위성락 • 박수현

송재봉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·공공성 유지 및 공 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보도·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·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, 보도·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·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 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2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방송법」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보도 ·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(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)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회의 등) ① ~ ④ (생	제22조(회의 등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방송
	법」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
	른 보도・논평의 공정성에 관
	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25조제1
	항제1호에 따른 제재조치(권고
	또는 의견제시는 제외한다)를
	정하려는 때에는 위원 7인 이
	<u>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